

[서식 예] 자동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

자동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⟨★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등기부상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금액의 표시

원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경매할 자동차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청 구 취 지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,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
- 2. 채무자는 위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.
- 3. 집행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도 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및 기타 적당하다고



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. 채무자에게 금 ○○○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갚을 날짜를 20○○. ○○. ○.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금 ○○○원으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인 ○○시에 20○○. ○. 등록접수 제○○○호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에 대한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전혀 갚지 아니하였는바,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이미 설정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| 1. 차용증서 | 1통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| 1통 |
| 1. 최고서 | 1통 |
| 1. 자동차등록원부(갑・을구) | 1통 |
| 1.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영수필통지서 | 각 1통 |
| 1. 집행비용예납서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| 1. 자동차목록 | 40통 |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[별 지]

경매할 자동차 목록

1. 자동차등록번호 : 서울〇타〇〇〇

1. 자 동 차 명: OOO L.P.G

1. 형 식 : ABC O O

1. 차 대 번 호: 00-00-00-000지

1. 원 동 기 형 식: ㅇㅇ-ㅇㅇ-ㅇㅇㅇㅇㅇ

1. 사 용 본 거 지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1. 소 유 자 : ♦ ♦ ♦ ♦



| | · | | : 자도차드로워브에 기재되 사요 |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|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| | | |
| |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임(사용본거지주의,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1 | | | |
| | 항 본문). | | | |
| 3.5.3.4 | 민사집행규칙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이송을 | | | |
| 제출법원 |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(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단서), 민사집 | | | |
| | 행규칙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 | | | |
| | 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짐(소재지 | | | |
| | 주의,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2항).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| | | |
| | 을 위한 경매에는 위 규정을 준용함(민사집행규칙 제197조제2항). | | | |
| 게 츠 브 스 | 비스 기카기 1비 | 고 려 버 구 | 민사집행법 제270조 | |
| 세출부수 | 신청서 1부 | 관 런 법 규 |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| |
| | (신청인) | | | |
| | ·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규칙 제108조, 제197 | | | |
| | 조, 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| | | |
| 불복절차 |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| 터 1주의 불변기간 |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| |
| 및 기간 | (이해관계인) | | | |
| | •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(민사집행규칙 제111 | | | |
| | 조제4항, 제197조). | | | |
| |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| | | |
| | ·인지액 : 5,000원(로만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| | | |
| | ·송달료 : (이해관계인 수+3)×000원(1회송달료) ×10회분 | | | |
| 비 용 | ・등록면허세 : 등록면허세 15,000원(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| | | |
| | 라목) | | | |
| | ·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 | 결정을 하는 때에 | 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 대 | |
| | 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. 다만, 그 자동차에 | | | |
| |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| | | |
| |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. 이 인도명 | | | |
| | 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,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 | | | |
| | 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음.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 | | | |
| | 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됨(민사집행규칙 제116조). 다만, | | | |
| 기 타 |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기 | | | |
| |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| | | |
| | 있음(민사집행규칙 제112조). | | | |
| | ㆍ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| | | |
| |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(민사집행규칙 | | | |
| | 제116조). | | | |
| | ·위 규정들은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| | | |
| |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 | 月매에 준용됨. | | |